

『주택청약저축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 (2022.11.23 현재, 세전)

구분	내용		
상품특징	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		
상품유형	자유적립식		
적립방법	2만원이상 ~ 10만원 이내		
가입대상	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		
납입기간	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만 납입 가능		
적용금리	기본 이율 (연 0% ~ 연 2.1%) - 가입 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, 정부 고시 변동금리 적용 - 가입 기간별 약정이율은 상품설명서 확인		
일부해지	х	불가	
세제혜택	0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	
예금담보대출	0	예금 잔액의 95% 범위 내 가늉	
예금자보호	х	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	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7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중도해지금리	중도해지 하는 경우,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		
이자계산방법	입금 건별로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해지 시 지급 ※ 가입기간 1년, 3회차 납부 후 해지 예시 1회차 입금금액 * 약정이율 /12*12 2회차 입금금액 * 약정이율 /11*12 3회차		
	입금금액 * 약정이율 /10*12		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

『주택청약저축』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계약은 주택청약저축 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이 적용됩니다.
-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(중서,전자통장을 포함)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• 상품명: **『주택청약저축』**

• 상품특징: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
2 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(중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2.11.23 현재. 세전)

구분	내 용				
가입대상	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- 만19세 미만일 때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늉 (단,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)	상품유형	적립식 예금		
거래방법	신규 : 영업점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 뱅킹				
납입기간	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	적립방법	자유적립식		
저축금액	매월 정해진 날짜에(신규 가입일 해당일)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- 한 회차당 금액의 끝수가 10원 미만일때 입금 불가				
적 용 이율	기입기간	적용이자율			
	1개월 이내	무이자			
	- 1개월 초과 ~ 1년 미만	연 1.3%			
10 12	1년 이상 ~ 2년 미만	연 1.8%			
	2년 이상	연 2.1%			
	※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 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				
중도해지 이율	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저축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을 적용 - 중도해지 시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에 대한 소득광제는 불가				
만기 후 이율	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				
일부해지	불가		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(일부해지 포함)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함 				

소득공제	대상자	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<u>※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</u> : 본인, 배우자, 같은 주소/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/배 우자의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. 다만,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봄			
	공제한도	서나/지역 나이 그브 어이 파세여드 나이그애(여기/미년) 하드/이 //아/고제 (치대6년년) 사			
	추징대상	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 시 (예외사항 : 사망,해외이주,85㎡이하 당첨해지 등) 또는, 국민 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분(기간 제한 없음)			
	추징세율	소득광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(연240만원 한도)의 누계액 x 6% (지방소득세 포함 6.6%)			
	유의사항	가입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대상 등록 되었으며, 자격상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등록 해제하 여야 함			
세제혜택	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단,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				
양도 및 담보제공	양도 불가, 예금담보대출은 계좌 잔액의 95%까지 가늉				
명의변경	가입자 사망의 7	가입자 사망의 경우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가능			
부가혜택	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청약권 부여				
해지시 불이익	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할 경우 주택청약권이 상실됨				
자동이체		• 월 불입액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함 ※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함			
계작부활	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부활 가능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부활 가능 ②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				
전자통신금 용 사기 범죄로 인한 해지시 부활	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피해를 당하여 해지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피해를 입중하고 해지시 지급받은 원금 및이자를 재입금하면 해지를 취소 할 수 있음 ①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및 수사결과통지서(송치 결정) ② 기타 해당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음을 중명하는 서류				
착오송금 반환	① 자기 또는 E ② 송금자가 하	보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음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송금한 경우 나 은행에 송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금반환청구(당행 및 타행) 신청하는 경우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청구액에서 발생경비를 제외한 금액			
	①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 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. 다만, 민영주택을 청약신청하는 경우로써 통장잔액에서 반환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② 압류,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③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한 경우				
튱장발행	이 예금은 통장	미발행이 가늉함			
연계·제휴서비스	해당사항 없음		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,7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	
금융소비자보호법	금융소비자 보호	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.			
예금자보호여부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,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(지급보중) 하고 있습니다.				

|유의사항

3 |

▶ 입금 관련 유의사항

- ①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 (신규가일입 해당일)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행하며,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②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60회차까지 가능합니다. 단,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.
- ③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.

▶ 청약 관련 유의사항

- ①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(단,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)
- ② 납입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.
- ③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차를 납입하여 인정,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여 인정, 수도권은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차를 납입하여 인정,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여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, 납입인정회차 (또는 납입인정금액)가 많을 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,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(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지연될 경우,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.)
- ④ 납입인정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도달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며,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환원은 불가합니다.

▶ 기타 유의사항

- ① 2015년 9월 1일 부터 신규 판매 중단 되었으며, 기존 가입자의 계좌 유지는 가능합니다.
- ② 청약저축,청약예금,청약부금, 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
- ③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,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
- ④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하며,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.
- ⑥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령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⑦ 가입자 정보(성명,전화번호,생년월일 등)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 가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(국토교통부, 주택도시보증공사)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